

제229회 임시회  
광진구의회

-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-  
**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 
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**



2019. 10. 4.

**기획행정위원회  
전문위원**

# -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-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제 1563호
----------	---------

2019.10.4.  
기획행정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19. 9. 19.
- 나. 회부일자 : 2019. 9. 23.
- 다. 상정일자 : 2019. 10. 2.

## 2. 제안설명

가. 제안설명자 : 최한철 기획경제국장

### 나. 개정이유

상위법 개정사항 (제명, 조문) 및 용어 정비 등 단순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법적 적합성 및 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# 다. 주요내용

- 1) 「정부조직법」 개정에 따른 부처명 정비
  - 행정자치부 → 행정안전부, 외교통상부 → 외교부,
  - 지식경제부 → 산업통상자원부, 중소기업청 → 중소벤처기업부
- 2)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정비
  - 행정관리국 → 행정국, 자치행정과 → 도시안전과,
  - 청소년팀 → 아동친화청소년팀
- 3) 일본식 한자어 및 장애인 차별 등 용어 정비
  - 계리 → 회계처리, 지참 → 지각, 장애자 → 장애인,
  - 각호의 1 → 각 호의 어느 하나, 자 → 사람

- 4) 「개인정보보호법」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정비
  - 주민등록번호 → 생년월일
- 5)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신설에 따른 과태료 준용 법령 규정 정비
  -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. → 「질서위반 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
- 6) 개별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 제명 등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 정비

## 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정부조직법」 제26조(행정각부),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,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4조의2(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)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- 입법예고 : 생략( §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)

## 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김기영)

- 의안번호 제1563호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」은 2019년 9월 19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9월 23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,
- 일괄개정조례안은 ①개정되는 각 자치법규가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같거나 동질적이고 개정되는 각 자치법규의 개정취지가 같은 경우나 ②예산이나 행정제도의 개편에 따라 같거나 관련성이 깊은 정책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로서 이에 따라 관계되는 자치법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형태이며,
-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(제명, 조문) 및 용어 정비 등 단순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법적 적합성 및 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
- 기획예산과에서는 전부서를 대상으로 2019.8.6.부터 8.26.까지 21일간 개정 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, 그 결과 총 58건(조례 35건, 규칙 18건, 훈령 5건)의 개정내용이 발굴되었음. 이 중 우리 의회의 검토대상은 조례 35건임.

▶ 일괄개정 세부유형별 건수

구분	합계	정부조직법	용어정비	주민등록번호	과태료준용	상위법령	보궐입기
총계	65	17	10	12	4	21	1
조례	36(중복1)	7	5	4	3	16	1
규칙	24	8	5	6	1	4	0
훈령	5	2	0	2	0	1	0

※ 중복 1건 :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조례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과태료준용 2가지에 해당

▶ 국(소)별 건수

국(소)	합계	담당관	행정국	기획경제국	복지환경국	도시관리국	안전건설교통국	보건소
전수	58	3	16	15	14	3	4	3

○ 주요 내용은

**가. 「정부조직법」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처(서)명 현행화**

-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 개정 조례는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등 총 7건이며, 이는 「정부조직법」 개정으로 중앙부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기존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5개 조례와, 광진구 조직개편으로 인한 변동사항을 미반영한 조례 2개에 대한 일괄정비로 입법의 신속·편의성은 물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**나. 일본식 한자어 및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**

-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 개정 조례는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

조례」 등 총 5건으로,

- “지참” 을 “지각” 으로, “계리” 를 “회계처리” 로, “각호의 1” 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 로 바꾸는 등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통한 행정용어의 바람직한 사용으로 **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** 하는 등 전체적으로 타당한 안으로 판단됨.
- 한자어 정비와 더불어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4조에서는 2017. 3. 23. 서울시설공단 조례가 개정되어 “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” 이라는 명칭이 “서울시설공단” 으로 현행화 된 내용을 반영하였고, 소규모공사를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적용제외 되던 규정을 기존 ‘제6조부터 제8조까지’ 에서 ‘제6조(수탁기관 선정기준) 및 제7조(수탁기관 선정방법)’ 으로 한정하여 위탁의 **공정성을 강화**하였음.

▶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」 개정안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적용의 예외) 소규모공사의 감독업무를 <u>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</u>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6조 <u>내지 제8조</u> 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	제14조(적용의 예외) ----- ----- <u>서울시설공단</u> ----- <u>및</u> <u>제7조</u> ----- -----.

**다. 「개인정보보호법」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정비**

-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 개정 조례는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수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」 등 총 4건이며,
- 「개인정보보호법」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의2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함에 따라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임.

## ※ 개인정보보호법

**제24조의2(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)**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.

1. 법률·대통령령·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헌법재판소규칙·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
2.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
## **라. 과태료 규정 정비 : “지방세 징수의 예” → “질서위반행위규제법”**

- 위 내용에 해당하는 개정 조례는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」 등 총 3건이며, 개별법령에서 통일되지 못하고 있던 과태료의 부과·징수절차를 일원화하고,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도록 하는 등 과태료 집행절차를 개선·보완함으로써 과태료가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정된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조<sup>1)</sup>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동법에 따라야 하는 바, 법령체계에 따르는 타당한 개정이라고 판단됨.

## **마. 개별 상위법령 제명 및 인용조문 등 개정사항 정비**

- 위 내용에 해당하는 개정 조례는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국어 진흥 조례」 등 총 16건으로 상위법의 제명 또는 근거 조항이 변경된 경우가 이번 개정 사례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,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」의 경우 근거법인 「국민건강보험법」이 2011년

1)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전면개정되어 관련 조항이 변경된 것을 현재에 반영하는 것으로, 향후에도 수시로 통보되는 법령개정사항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반영하여야 입법 공백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.

## 바. 위원회 위원의 보궐임기 개정

-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 조례는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1개이며,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.

현 행	개 정 안
제4조 (위원의 임기)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<u>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u>	제4조 (위원의 임기)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<b>&lt;삭 제&gt;</b>

-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 제13조제5항에서는 “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” 고만 규정할 뿐 **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**. 상위 법령에서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보궐위원의 임기도 2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.<sup>2)</sup>
- 일반적으로 보궐위원의 임기라고 하더라도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**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이 아닌 2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**.(법제처, 『법령입안심사기준』, 2017, 376쪽 및 법제처, 『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』, 2018, 209쪽 참고)
- 본 조례안 외에도 자치법규 전반에 걸쳐 보궐위원의 임기규정이 광범위

2) 법제처 “2018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례집” p.106

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, 향후 각 조례마다 임기를 통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여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.

## ○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23조에 따라 오랜기간동안 수정·보완하지 않은 자치법규와 상위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가 시급한 개별 조례들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시급하고 타당한 개정이라고 판단됨.
- 일괄개정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이 관련 조례에 적절히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, 향후에도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의 안정적인 법체계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일제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회의록 참조

## 5. 토론

- 회의록 참조

## 6. 심사결과

-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

## 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